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3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한병도・위성곤・진선미

박정현 · 김한규 · 정태호

정준호 · 김영배 · 박수현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가령, 쓰레기 처리와 같은 동네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주택·교통 문제등 도시 수준의 문제,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국가나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과거의 대응 방식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해결방안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그 결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해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련 제도 등을 도입 ·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 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주체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문제 단위 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 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 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국·공유 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을 말한다.
 - 2. "지역사회주체"란 지역주민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 3.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 4. "지역사회혁신"이란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 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역주민 등의 권리) ①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하 "지역주민 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지역주민은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지방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회혁신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계획수립

제6조(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 ① 지역주민 등은 해당 지

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단위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이하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 내에서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문제의 정의 및 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안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이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시·군·구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협의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 및 제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시·군·구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계획 및 시·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등에 관한 기본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 전문인력과의 연계·협력방안 등에 관한 사항
 - 5.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정책 및 사업 등의 재원조 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6.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유휴 공유 재산의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④ 시·군·구계획은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하고,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을 반영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지역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사회혁신 지원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국가지원 정 책 또는 시책 및 그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 4.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7조의 지역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10조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원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추진체계

- 제9조(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 ① 지역사회혁신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6조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혁신 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지역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위원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으로 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제10조(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 ①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있는 사람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 조정이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전국단위 지역주민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전담부서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업무
 - 2.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4.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의 지원
 -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수행
 - 3. 주민,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지 원센터의 운영을 조례로 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 있으며, 지역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③ 그 밖에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분석
 - 2.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 3. 지역사회혁신 관련 정보의 수집 · 가공 및 제공
 - 4. 지역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5. 지역사회혁신 지원사업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6. 지역사회혁신 활동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이에 따른 성과 평가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 ③ 그 밖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사회혁신의 기반 조성 등

-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문 제의 현황 및 주요 해결활동, 지원사업,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등이 수행하는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사업 또는활동에 대해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국·공유 재산 활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 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

립·제안한 지역주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감면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